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41 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이재관·정성호·장종태

김성환・김 현・강준현

윤준병 · 김남근 · 복기왕

남인순 • 박지원 • 어기구

오세희 · 정태호 · 박희승

양부남 • 신영대 • 정준호

송재봉 • 이광희 • 김영환

이언주 • 부승찬 • 민형배

민병덕 • 김재원 • 윤종군
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반도체·이차전지 등 국가·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전략기술로 지정하고, 전략산업의 육성·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, 전략기술의 수출 및 해외 인수·합병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미국·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현지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면서, 우리나라 기업들에 민감한 영업기밀 등의 핵심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전략기술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 또한, 현행법상 기본계획 및 전략기술 유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가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우리나라 전략기술 보호·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기술 보유자가 외 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화하고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기본계획 및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5조제4항, 제12조제6항 및 제45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,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전략산업등 육성・보호 기	제5조(전략산업등 육성・보호 기
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	본계획의 수립 등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
	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
	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
	에 보고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12조(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)	제12조(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전략기술보유자가 실질적으
	로 지배하는 해외사업장에 대
	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
	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
	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
	5항까지를 준용한다.
<u>⑥</u> (생 략)	<u>⑦</u> (현행 제6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45조의2(국회에 대한 보고) ①
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
	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
	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
	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
	<u>여야 한다.</u>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기술의 유출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내용,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